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6가합543933 판결 [신원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론 종결 2018. 3. 14.

판결 선고 2018. 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674,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8. 3. 28.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7,799,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6. 6. 23.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식품 및 위생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0년경부터 일본에서 생산되는 'C(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여 왔고, D은 2010.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원고의 영업담당 차장으로서 이 사건 물품의 수입·판매 업무 등을 전담하였다.

2)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2012. 1. 20. 원고와 사이에 "D이 원고와의 계약근로 중향후 2년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D과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D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음으로부터 2012. 5. 3. 및 같은 해 5. 25. 수입정산대금 합계 103,217,558원을 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4.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36, 서울고등법원 2015노516).

다. 관련 민사사건

원고는 D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D은 원고에게 578,010,694원[= 544,793,136원(= 2011. 4. 11.부터 2012. 10.12.까지 이 사건 물품의 염가판매행위로 인한 손해액 907,988,560원 × 책임제한비율60%) +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103,217,558원 - 변제공탁금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6나 20490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D은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인 2012. 1. 20.부터 2014. 1.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517,799,288원[이 사건 물품의 염가판매행위로 인한 손해액 414,581,730원{690,969,550원(= 907,988,560원 - 217,019,010원1) × 책임제한비율 60%} +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103,217,558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여기에서 D이 변제공탁한 7천만 원을 공제하면 447,799,28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D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447,799,288원 및 이에 대하여 D의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신원보증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보증기간 동안 D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여부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므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신원보증법과 보증계약의 정의, 보증기간, 통지의무 등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원보증법 제4조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3년 D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음에도 신원보증법 제4조에 따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원보증법은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제4조 제1항 제1호),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며(제4조 제2항), 신원보증인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 신원보증계약의 특수성과 함께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은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의 관계,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 업무의 내용과 피용자에 대한 책임의 가중 또는 감독의 어려움의 정도, 임무 또는 임지 변경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예측가능성, 가중된 책임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변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경 D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D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의 염가판매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 역시 인정되고,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원고가 D을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하여 즉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고소사실 미통지만으로 피고의 신원보증인책임이 부정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원보증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은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의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한 것에는 원고의 관리·감독상의 부주의도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전체 손해 중 이 사건 물품의 염가판매행위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60%의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는 D의 배우자로서 아무런대가 없이 D의 신원보증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어 왔는데 이전 계약에서는 보증한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²⁾ 등에 의하면, 피고의 신원보증책임은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상 보증기간 동안 D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중 289,674,843원[724,187,108원(= 이 사건 물품의 염가판매행위로 인한 손해액 690,969,550원 +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103,217,558원 - 원고가 D의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7천만 원) × 책임제한비율 4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D의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2. 10. 1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판사 강하영, 판사 신세희

- 1)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이전인 2011. 4. 11.부터 2012. 1. 13.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 2)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